

실학사상기의 복식문화 I

—정약용의 문헌을 통한 고찰—

정 헤 겸

경남대학교 가정교육학과

The Costume in the Era of Practical Science

—Through the books written by Yack-Yeung Chung—

Hye Gyung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1992. 1. 4 접수)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costume in the era of Practical Science through the books written by Yack-Yeung Chung.

Conclusions are described as follows:

1. A disorder of a class system is to be seen from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pper class costume and the lower class costume.
 2. He made an effort to develop techniques and enlarge the specialist for the revolution of costume system.
 3. He stressed the thrift for the revolution of custom through clothing.
 4. He insisted that the use of clothing be out of formal courtesy, from the fact he showed his idea for the basic courtesy.

I. 서 롤

조선시대 500년간의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시기로 구분될 수 있지만 18, 19세기의 실학 사상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측면에서 하나의 역사적 전환기가 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실학사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근대화 작업을 일으켜 그 영향력이 지대하였으며 복식문화사의 측면에서 볼 때 복식의 내적인 변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대의 사상적 변화에 의거하여 실학사상을 구분함으로서 복식문화를 고찰한다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취지에서 시도된 것으로 조선후기 실학사상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저술을 통하여 실학사상기의 복식문화를 살펴본 것이다.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한 자로 평가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 연구 업적을 남겨 5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본고에서는 그의 저술 중 당시의 의생활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본연구의 목적은 정약용의 실학적 사상이 복식에 표현된 실학적 복식관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정·야용의 개혁사상 중 복식에 대한 개혁론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개혁의 여러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복

식과 관련된 네 가지 주제-신분제도의 개혁과 의복제도, 직물산업 개혁론, 의생활 풍속 개혁론, 의복관과 예론 -를 설정하여 고찰함으로서 이들 각부분에 나타난 정약용의 사상과 복식관을 살펴보고 나아가 실학사상기의 복식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조선후기 실학사상기에서도 정약용이 살았던 한정된 시기의 복식문화에 관한 연구이지만 실학사상기 전반의 복식문화를 탐구하는 작업에 있어서 기반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II. 본 론

1. 신분제도의 개혁과 의복제도

정약용은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양반신분제도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양반신분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들에게 착취당하는 서민의 생활을 고발함으로서 신분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실의 신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당시의 사회역사적 조건이라는 제한을 받고 있는 한정된 개혁이라 볼 수 있겠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분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실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명분만의 양반을 거부하고 여러계층의 사람들을 능력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신분제도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사회신분을 구분한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양반(兩班), 중인(中人), 양인(良人), 천인(賤人)의 4계층이며 때에 따라 세분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신분계층에 따라 의복제도를 기록한 바에 의하면 공복(公服)과 서인복(庶人服)으로 나누고 있다. 공복은 당시 문무관의 복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서인복에서는 그 계층을 다시 진사(進士), 거인(舉人), 그밖의 사람으로 나눔으로서 신분제도의 개혁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서인복에 대해서만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특별히 거인이란 양반과 중인, 양인중에서 지방관에 의해 과거응시에 천거된 자들로서 이처럼 여러 계층에서 능력에 따라 거인을 선정한 것에서 신분제에 대한 정약용의 중심사상을 읽을 수 있다. 거인이란 '서인복의(庶人服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부현(部縣)에서 천거된 사람이(위의 과폐소(科弊疏)에 나타났다) 거인이요, 중인으로 의(醫), 역(譯), 역(歷), 율(律), 서(書), 화(畫), 산(算), 수(數)의 과

(科)에 천거된 사람이 거인입니다. 사족(士族)으로 문자(文字)를 조금 아는 사람은 반드시 거인이 될 것이니, 사족도 원망이 없을 것이며, 중인으로 능히 본 직업을 둔은 사람은 반드시 거인이 될 것이니 중인도 원망이 없을 것이며, 범민(凡民)으로 준수한 사람도 또한 거인이 될 수 있으니, 범민도 또한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³⁾

신분제도에 대한 그의 이러한 입장은 복식제도의 개혁 논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분제의 개혁과 의복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 주제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진사, 거인과 천민 계층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진사, 거인

진사, 거인 계층은 다산이 새롭게 분류한 신분계층으로 이들이 착용하도록 제시된 복식은 실제로 착용하는 바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복식 형태와 무관하지는 않았다.

그가 이들 계층의 의복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는 이들이 신분에 맞는 의복을 착용하도록 등차를 두고자 한 것이다.

"진사(進士)는 심의(深衣)로써 상복(上服)으로 삼고, 거인(舉人)은 창의(敞衣)로써 상복(上服)으로 삼고, 그 외에는 협수장유(夾袖長襦: 시속에는 소창의(小敞衣)라 한다)로써 상복(上服)으로 삼는다면 백성들이 편안히 여겨서 영(祿)이 시행될 것입니다."⁴⁾

당시 대다수의 양반들은 창의 입기를 즐겨하였다. 그런데 양반이지만 거인계층에 들지 못한 경우에 협수장유 즉 소창의를 입는다는 것은 상당한 반대가 예상되었으므로 다산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족(士族)으로 거인(舉人)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즐거이 장유(長襦)로써 상복(上服)으로 삼겠습니까?' 하지만, 신(臣)은 말하기를 우리나라 부인(婦人)의 의복은 정경부인(貞敬夫人)과 동자아치가 다툼이 없으니 풍속이 이루어지면 백성이 이를 편안히 여길 것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⁵⁾

그러나 이 진사, 거인 계층은 어디까지나 다산이 나름대로 제안한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의복도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각 계층에 따라 의복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은 당시 신분제도의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만, 명분을 떠나 능력에 따라 거인계층을 구분하고 그에 맞

는 의복을 입도록 한 것에서 신분제 개혁에 대한 그의 이식을 엿볼 수 있다.

2) 천민

정약용은 원칙적으로 양반계층에 대비하여 천한자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천민이 신분에 넘는 의복을 착용하는 데 제재를 가하였다.

당시 천민들간에는 양반관료와 같은 복식을 착용하는 풍속이 있어 포정(庖丁: 백정)과 개백정(狗屠)의 천인도 모두 도포를 입고 그 안에 창의와 장유를 입어⁶⁾ 신분 계층의 혼돈이 팽배했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이런 풍속에 대하여 위계(位階)가 문란해지고 기강이 없어지므로 등위를 명확해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⁷⁾, 조정의 명령 없이 수령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순순히 타일러 조심하게 할 것이라 하여⁸⁾ 현실의 모순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일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천민들의 의생활은 사회 신분질서의 혼란을 반영해주고 있는데, 사실 당시에는 유전(儒巾)을 쓰고 과장(科場)에 드나들기만 하여도 양반이 된다는 말이 있었으니⁹⁾ 신분제의 혼란을 가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착취당하고 있는 천민의 일상생활을 사실적인 시(詩)로 표현하여 백성들은 구제받아야 할 대상임을 주장하고 있다.

“닳아 해진 푸른 무명이 불 오직 한 채뿐이라서
부부유별 이 집엔 가당치 암네
어린 것 해진 옷은 어깨 팔뚝 다 나왔고
날 때부터 바지 버선 걸쳐보지 못하였네”¹⁰⁾

따라서 정약용의 저술에 나타나고 있는 천민들의 의생활은 사회 신분질서의 혼란을 반영해 주는 면도 있으며, 아울러 양반계층에 착취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시대적 고발을 담고 있기도 하다.

2. 직물 산업 개혁론

정약용의 경제사상 중 두드러지는 것은 산업개혁론으로서 이를 통하여 나라를 부강케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들을 제기하였는데 예를 들면 기술의 증대, 기계의 근대화,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적 관청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그는 기술의 증대를 이루기 위하여 복학파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의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여전히 가내수공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던 직물업에 있어서도 기술의 증대를 주

장하였다.

“베짜는 기술이 정교해지면 드는 재료가 적어도 실은 많이 생산될 것이며, 노력을 조금만하여도 포백(布帛)은 아름다울 것이다. 무릇 물에 담그고 빨고, 실을 좋아뽑고, 베짜고 표백하고 염색하고 풀먹이고 바느질하는데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하고 노력을 덜게 될 것이다.”¹¹⁾

따라서 직조에 관계되는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직기(織器)를 만들어 백성들이 능률적으로 이용하고 의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수령의 임무라고 하였다. 이때 제시한 직조기는 「직기도보(織器圖譜)」에서 고른 것으로 목화씨를 발라내는 교거(攬車), 방차(紡車), 실을 감아두는 발거(撥車), 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광상(軒牀), 선가(線架), 물레의 일종인 반거(蟠車)와 부거(絆車), 그리고 여러가닥의 실을 꼬는 승거(繩車)와 인거(綴車) 등이 있다¹²⁾.

그리고 척도를 포백척으로 단일화하여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으며, 세밀한 부분까지 측정해야 하는 기술자들은 포백척의 눈금이 드물므로 별도로 반자길이의 자를 만들어 한 눈 사이에 또 한 눈을 새겨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¹³⁾.

다음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민의 직업을 「주례(周禮)」에 따라 9직으로 나누어 생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때 포백을 짜는 전문직으로서 빈공(濱功)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사농공상이 뒤섞여 직업의 분화, 전문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전문인력의 양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만 의류직물관계의 직에 종사하는 전문직으로는 바느질을 전문으로 하는 침가(針家)의 침비(針婢: 이른바 针匠이라 한다)가 있었다¹⁴⁾.

3. 풍속의 개혁

정약용은 풍속이란 의도적인 시도에 의해 바꾸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가 의생활 풍속의 개혁안으로 주로 제기하고 있는 바는 겸소함에 대한 것으로서 위로는 국조복의 간소화로부터 지방관리의 겸소함 및 부녀자, 서인층의 사치금지 등을 들 수 있다.

당시의 국조복은 ‘공복의(公服議)’에 의하면 조복(朝服), 제복(祭服), 길복(吉服), 시복(時服), 응복(戎服), 군복(軍服), 갑주(甲冑), 천답복(淺淡服), 연복(燕服), 설복(穀服)의 10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

서 길복은 곧 상복(常服)이며, 시복은 「성호사설(星湖塞設)」에 의하면 공복(公服)을 대신하여 입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 국조복은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번잡스러우며 구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길복, 군복, 천답복, 갑주의 4종류로 간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릇 이 10종의 의복 중에서도 한절(寒節)과 서절(署節)로써 같지 않은 것이 8가지요, 직품(職品: 당상관과 당하관)으로써 같지 않은 것이 4가지이니, 나누어 말한다면 대개 수십 종이나 될 것입니다.”¹⁵⁾

“신은 이들 여러 의복중에서 그 두가지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길복(吉服)은 두어야 되고 군복(軍服)은 두어야 되니, 길례(吉禮)와 빈례(賓禮)와 가례(嘉禮)는 모두 길복(吉服)을 입고 군례(軍禮)는 군복(軍服)을 입게 할 것입니다. 흉사(凶事)가 있으면 천답복(灘淡服)을 입고 병사(兵事)가 있으면 갑주(甲冑)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길복(吉服)과 군복(軍服) 중에서도 또한 문채있는 것을 버리고 실제적인 것을 힘쓰며 사치한 것을 버리고 검소한 것을 따를다면.....”¹⁶⁾

지방관리의 의복에 대하여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위의를 갖추어야 하며, 검약한 것으로 백성의 본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수령(목민관)의 의복은 사모, 창의(청색)였으나 잔혹 종전(駿巾)과 협수의(夾袖衣: 소창의)를 착용하여 위의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¹⁷⁾. 또한 검소함은 지방관리가 모범을 보여야 할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복과 음식은 검소한 것으로써 법식을 삼아야 하며 조금만 법식을 넘어도 그 씁쓸이에 절도가 없어져 버린다. 의복은 성글고 검소한 것을 입도록 힘쓸 것이다.”¹⁸⁾

이 검소함은 곧 청렴하게 하며 나아가 자애를 베풀 수 있어 목민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있어 근본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¹⁹⁾.

지방관리 부인의 복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검약함은 요구되고 있다.

“의복을 사치스럽게 입으면 뜻 귀신도 미워하는 것이니 복을 깍는 일이다. 부인의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다. 대부분 소견이 천박해서 남편이 고을살이 나간다는 말을 듣기만 해도 금방 한 보따리 부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생각한다. 그 장식, 패물을 곱게하는 데만 힘써서 함부로 경저(京邸)의 돈을 토색해서 아파(牙

齒: 속칭 방물장수)를 마구 불러들여 전기한 비단, 가는 모시비, 고운 삼배, 용을 아로새긴 비녀, 나비 모양의 노리개 등으로 아이들을 요물처럼 꾸미고 여종들을 창기처럼 만들어서 그 어느 집보다도 뛰어나서 가는 길을 빛내고자 한다.”²⁰⁾

반면에 서인복식에 대한 풍속개혁안은 검약함의 차원 뿐만 아니라 계급의식에 바탕을 두고 제재를 가하고 있기도 하다.

“신(臣)은 생각하기를 서인(庶人)의 의복은 더욱 마땅히 제재 억제하여 귀하고 천한 사람을 구별하고 쓸데 없는 비용을 생감(省減)해야 될 것입니다.”²¹⁾

또한 당시 충국으로부터 능단(綾綢)을 수입하는 대신 많은 양의 금은이 반출되는 현상을 배격하여 능단의 사용을 제한하여 견약한 풍속을 이루고자 하였다²²⁾. 하지만 이미 신분제도에 따른 의복 착용의 제재가 일반 백성의 경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던 시대적 추이로 보아 이러한 풍속은 법으로 고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상의 검소한 풍속을 이루고자한 것 외에 또 하나의 개혁을 시도한 바는 봉당의 타파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의 당쟁은 극심하여 당색간에 의형상으로도 구별을 두었는데, 정약용은 정조(正祖)의 명에 의하여 복건을 매개로 남인과 서인의 화합을 꾀하고자 한 일이 있었다.

“복전(幅巾)은 제도법을 잃어버려 주자(朱子)가 논한 바 횡첩지법(橫輶之法)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남인들은 복건을 쓰지 않는다.

임진(丙辰: 정조 20, 1796(注)) 겨울 상(上)계세연신(筵臣)들에게 이르기를 한 조정에 함께 있으면서 건복(巾服)의 제도가 다른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채좌상(蔡左相), 이가환(李家煥), 이기양(李基讓), 정약용(丁若鏞) 네사람이 쓰면 남인은 반드시 모두 쓸것이니 내일 4인이 모두 입궐하고 또 복건을 쓰도록하고 금호문(金虎門) 밖에서 벗도록하라 하니 이에 4가(家)에서는 밥가는 것을 잊고 겸은 비단을 샀으나 부인들이 이제는 제조법을 몰라서 편지를 보내 서인의 복건을 빌려서 밤새도록 제때에 만들어 아침에 맞추어 대궐에 나아갔으니 역시 성세(盛世)의 일이었다.

이때에 노론은 일궐으면 반드시 단건(禪巾)이요, 소론은 일궐으면 반드시 겸건(衿巾)이었다.

내가 승정원(承政院)에 도착하니 서로 다투어 물었다.

내가 웃으면서 속담에 물리려면 차라리 큰 호랑이에게 물리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4인이 모두 단건(禪巾)을 쓰니 노론이 모두 크게 기뻐 하였다(겹건(祫巾)은 소론의 제도이며, 노론은 단건(禪巾)이다). ”²³⁾

그러나 그 자신이 바로 이 당쟁의 희생물로서 1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던 사실을 생각한다면 겸약한 생활로 이끌고 당쟁간의 화해를 이루고자 하였던 이 풍속의 개혁안은 이미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 없는 한계에 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의복과 예론

정약용은 의복의 용도에 대하여 실용과 표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의복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용도가 두 가지가 있으니 한 가지는 몸을 따스하게 하는 것이요, 한 가지는 몸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몸을 따스하게 하는 것은 갖옷과 비단을 만들어 바람과 추위를 막아야 이것이고, 몸을 가리우는 것은 문장(文章)을 만들어 귀하고 천함을 표시해야 이것입니다.”²⁴⁾

이는 우리의 선인들이 생각해왔던 복식관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예들들면 「삼일신고(三·一神誥)」에는 “웃은 추위와 더위를 막으며 귀하고 천함을 표시하는 것이니……”라고 하였다²⁵⁾.

여기에서는 의복이 실학사상기에 있어서 예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의복에 있어서 표식기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귀천의 표식이란 천한자에 대하여 귀한자 즉 지배계층의 우월을 표시하는 것이다.

지배계층의 표식을 위해서 종래에 강조된 면들은 「경학대장(經學隊仗)」에 의하면 문장(紋章)으로 덕과 의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지배계층의 의복은 사치로 훌렸으므로 정약용은 이들의 사치를 막고 위의를 갖추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이는 다른말로 표현하면 의복을 예에 맞게 쓴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정약용은 당시 양반계층이 선비라고 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학문과 독서만을 본업으로 삼아 비생산적이며, 또 양반 유생의 학문이 협된 학문의 풍조에 따르고 있는 것을 한탄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봉액(逢掖)의 옷을 입고 절하고 읍(揖)하는 것만을 연습’하는 것 뿐인 허례(虛

禮)에 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²⁷⁾.

이 시기는 송(宋)대 주자학의 영향으로 예개념이 가례(家禮)에 치중되어 예의 범위가 축소되고 의식화(儀式化)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다산은 이같은 4례에 치중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예개념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²⁸⁾.

그의 이러한 예사상은 의복에 있어서 이미 신분제의 개혁과 풍속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언급되었다. 특별히 지배계층에 있어서 의복이 위의를 갖추는데 적합하며 겸소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점은 허식에 치우친 예에서 벗어나 예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I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거하여 당시의 복식문화 및 정약용의 실학적 복식관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시 사회신분제의 혼란과 정약용의 신분제에 대한 개혁의지에 따라 상층 복식문화와 하층 복식문화가 상호 교류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상층 복식문화에 하층 복식문화가 도입되는 예를들면 양반중에서 거인계층에 들지 못한 사람에게 천인들이 입었던 장유(僭수장유, 즉 소창의)를 입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약용이 제시한 개혁안이며 실제로 이와같이 행해진 것은 아니다. 상층복식이 하층으로 전파되는 현상은 신분제의 혼란으로 계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의복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어 생긴 것으로 배정, 개백정 같은 천민이 도포, 창의를 입기도 한 것이다.

2. 정약용은 의류산업의 개혁을 위하여 기술의 증대와 전문인력의 양성등을 꾀하였다. 기술의 증대라는 면에서는 복학파와 같은 견해를 보여 중국의 기계를 모방하여 직조 기술의 증대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전문인력의 양성은 당시 사회가 전문화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실현되기 어려웠으며 다만 바느질하는 침비와 일부 물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공업자등이 있었다.

3. 의복을 통한 풍속의 개혁에 있어서 문무관복에까지 겸악을 강조하고 목관(牧官)의 행동에서도 우선적으로 겸악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한편 천민계층에서는 의복의 겸악과 더불어 계급의 차등에 따른 제약을 가했다. 그 밖에 복건제(幅巾制)를 통하여 당쟁간의 화해를 꾀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풍속개혁안들은 모두 시대적 한계

에 부딪혀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4. 의복의 용도는 실용과 표식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표식이란 곧 예(禮)에 맞게 쓴다는 의미가 된다. 정약용은 특별히 양반 유생들에게 있어서 의복으로 인한 허례(虛禮)를 비난하였다. 즉 그는 조선의 유학이 예학(禮學)의 학풍으로 변모함에 따라 당시 사회에 편만하였던 허례적 요소를 벗어버리고 본질적인 예를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인 용 문 현

- 1) 慶鏞廬, 「다산 정약용의 사회신분제도 개혁사상」, 『다산학의 탐구』, 民音社, 82-85, (1990)
- 2) 같은 책, 77-82.
- 3) 庶人服議, 「與猶堂全書」, 第1集, 186 上.
- 4) 庶人服議, 같은 책, 186 上.
- 5) 庶人服議, 같은 책, 186 上.
- 6) 庶人服議, 같은 책, 186 上.
- 7) 牧民心書, 禮典六條 辨等, 「與猶堂全書」第5集, 475 上.
- 8) 牧民心書, 禮典六條 辨等, 같은 책, 476 上.
- 9) 身布議, 「與猶堂全書」第1集, 183 上.

- 10) 奉 旨廉察到積城村舍作, 「與猶堂全書」第1集, 27 上.
- 11) 技藝論二, 「與猶堂全書」第1集, 227 上.
- 12) 牧民心書, 戶典六條 勸農, 「與猶堂全書」第5集, 445 上.
- 13) 度量衡議, 「與猶堂全書」第1集, 183 下.
- 14) 牧民心書, 律己六條 齊家, 「與猶堂全書」第5集 185 下.
- 15) 公服議, 「與猶堂全書」第1集, 185 下.
- 16) 公服議, 같은 책, 185 下.
- 17) 牧民心書, 律己六條 飭躬, 「與猶堂全書」第5集, 312 上.
- 18) 牧民心書, 律己六條 節用, 같은 책, 331 上.
- 19) 牧民心書, 赴任六條, 治裝, 같은 책, 303 下.
- 20) 牧民心書, 律己六條 齊家, 같은 책, 326 上.
- 21) 庶人服議, 「與猶堂全書」第1集, 186 上.
- 22) 錢幣議, 같은 책, 185 上.
- 23) 茂蕪李基讓墓誌銘 附見 閒話條, 「與猶堂全書」第1集, 324 上.
- 24) 公服議, 같은 책, 185 上.
- 25) 「三·一神誥」, 治化紀.
- 26) 崔致遠, 類設經學隊仗.
- 27) 俗儒論, 「與猶堂全書」第1集, 243 下.
- 28) 李乙浩, 「다산학의 이해」, 玄岩社, 113-134 참고, (1979)